

[시점/기간]

-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▶ 환매금지형 -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함
- 개인종합저축계좌(ISA) 의무가입기간 ▶ 3년
- 연금보험 비과세 ▶ 10년 이상 유지시
- 연금저축 연금수령 ▶ 가입 후 5년 경과, 만 55세 이후
- 양도성예금증서(CD) 예치기간 ▶ 30일 이상 제한 없음(91일이 일반적임)
- 증권신고서는 금융위가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
- 초과배정옵션제도 옵션행사일 ▶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
- 일반재상장 ▶ 상장폐지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장(코스닥시장에는 없음)
-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려면 영업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(코스닥시장은 영업활동기간 심사X)
-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15영업일, 코스닥시장은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-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▶ 1일간 거래정지, 벌점 부과,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등
- 매수대금을 미납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지정된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100% 징수한다 (매도증권 미납은 90일간)
- 배당락 및 권리락 모두 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권리 생김
- 국채전문유통시장 익일결제 / 일반채권시장 당일결제 / 대고객 상대매매 30영업일 이내(익일결제가 보편적)
- 코넥스시장 ▶ 지정기관투자자가 일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특례상장이 가능(6개월, 10%, 30억)
- K-OTC시장 등록 ▶ 비상장기업의 신청 ▶ 협회는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등록여부 결정
- K-OTC시장의 정기공시 ▶ 사업보고서 90일 이내 / 반기보고서 45일 이내
- K-OTC시장의 조회공시 ▶ 등록법인에 관한 풍문, 보도가 있거나 주가급변시 협회가 요구 - 1일 이내 공시
- K-OTC 등록법인의 해제 사유 발생 시 ▶ 3영업일간 거래정지 후 10영업일 내에서 정리매매 후 해제
- K-OTC 등록법인 불성실공시 지정횟수 ▶ 최근 2년간 4회 이상 - 투자 유의사항
- K-OTC 등록법인 불성실공시 지정횟수 ▶ 최근 2년간 6회 이상 - 등록 해제
- 예금의 벤치마크 ▶ 3년 정기예금 금리 // 단기금융상품의 벤치마크 ▶ CD 91일물
-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 측정법 중 펀더멘털 분석법
주식의 기대수익률 = 무위험이자율(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사용) + 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
- 법인 및 단체가 자발적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100억원(외부감사대상법인은 50억원)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▶ 2년간 전문투자자 효력

-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▶ 예비인가 : 2개월
▶ 심사기간 : 3개월 이내(예비인가 받은 경우 1개월)
- 경영실태평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
▶ 경영개선권고: 6개월 / 경영개선요구: 1년 / 경영개선명령: 금융위가 정한 기간
- 겸영업무 :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금융위에 보고(사후보고)
- 부수업무 :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(사후보고)
- 업무위탁 : 업무 수행일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(사전보고)
- 투자권유 거부한 투자자에게 재권유 ▶ 1개월 경과 후
-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·변경시 미리 금융위에 신고 ▶ 변경후 7일 이내 금융위 및 협회에 보고하는 경우 ▶ 협회 표준 약관 그대로 이용 ...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정·변경 등
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
-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▶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의무
-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(스캘핑금지) ▶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 자기 계산 매매 금지
- 증권이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공표·제공 금지
-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다
- 증권신고서 신고 대상 금액 ▶ 6개월간 행위를 합산하여 모집·매출을 결정하는 경우 청약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- 증권신고서-정정신고서 ▶ 정정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발행인이 미제출시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봄
- 증권신고 간주모집 전매가능성 없는 경우
 - 예탁결제원에 증권예탁 후 1년간 인출하지 않기로 계약체결 후 이행
 - 전환권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
 - 50매 미만으로 발행 :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 특약 기재
-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▶ 발행인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
-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▶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
- 정기공시 반기(분기)보고서 ▶ 반기 및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
 - 사업보고서 최초 제출 법인은 제출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
- 공개매수 ▶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/ 100분의 5 이상
-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▶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까지
-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 제한 ▶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, 금융위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음
- 외국인 : 국내에 6개월 이상 주고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
-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▶ 6개월 이내 매수 및 매도하여 얻은 이익

- 주권상장법인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제도 ▶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 / 그 증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누적 변동수량이 1,000주 이상이거나 누적취득금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까지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 의무
-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▶ 동일 종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영업일 이내 +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
- 자본시장 조사결과 조치 ▶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,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, 인가나 등록의 취소 등 /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, 시정명령 또는 처분명령, 과태료, 과징금 부과
-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~24개월 동안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- 고령투자자 숙려기간 ▶ 2영업일 이상
- 권리구제 목적 자료열람요구권 ▶ 8일 이내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
- 판매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▶ 6영업일 이내 제공하는 것이 원칙
-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, 관리
- 준법감사인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
- 청약철회 ▶ 7일내(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) / 3영업일 이내 반환
- 위법계약해지 ▶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+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
 - ▶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 후 통지(10일 연장 가능)
 - ▶ 위법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- 금융회사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고객에게 제시 (기타 정당한 사유 더 있음)
- 해피콜 ▶ 7영업일 이내
- 사적이익 추구 금지 ▶ 부당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령 금지 - 관련 기록 5년간 보관
-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 통제 ▶ 영업점별 영업관리자 요건 -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있을 것 / 준법감시, 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 / 준법감시인은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/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-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행정제재 : 금융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(30일 연장 가능)
- 금감원의 분쟁조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▶ 위원회 회부 후 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▶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
- 협회의 분쟁조정 :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▶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(15일 이내 연장 가능) ▶ 조정결정수락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 제출(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) ▶ 회원은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협회에 제출 ▶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 가능

[분기·반기]

- 코넥스시장 기업설명회는 반기마다 개최하여야 함
 - ▶ 사업보고서 미제출, 기업설명회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 내 4회 이상 미개최시 상장폐지
- 투자일임계약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
- 불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회신하여 줄 것을 매분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
- 자산건전성 분류 ▶ 매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/요주의/고정/회수의문/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
-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(주요직무 종사자는 월별로 통지)
- 내부통제위원회 ▶ 매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 개최 / 5년 이상 관련기록 유지
- 사적이익 추구 금지 ▶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점검 ▶ 매년 이사회에 보고

[분수/비율]

- 경영공시요건 :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
 - ▶ 부실채권의 발생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 금액 초과할 때
 - ▶ 금융사고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
 - ▶ 민사소송 패소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
-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에서 담보비율은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
-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제한
 - ▶ 증권분석기관 임원이 해당 법인에 출자 혹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분석기관에 출자 - 100분의 1 이상 출자
 - ▶ 증권분석기관이 해당법인에 출자(그 반대도 포함) - 100분의 3 이상 출자
 - ▶ 동일인이 양쪽에 출자 - 100분의 5 이상 출자
- 공개매수 요건 ▶ 주식등을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+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(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)의 주식 등의 총수가 100분의 5 이상일 것
-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 제한 ▶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주주는 초과 소유 금지 / 외의 자는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초과 소유 금지 /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, 금융위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음
-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외국인 제한 ▶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는 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
- 금융기관의 주요정보 보고사항
 - ▶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
 - ▶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